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30 선고 2023가단54482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, 담당변호사 성승용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4. 2.

판 결 선 고 2024. 4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,375,465원 및 그중 17,375,393원에 대하여 2023. 9. 20.부터 2023. 12. 6.까지는 연 8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금 잔액 및 확정손해금 합계

17,375,465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17,375,39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. 9.

2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. 12. 6.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8%, 그다음 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
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구자광

별지